고용노동부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8. 31.(목) 12:00 (2023. 9. 1.(금) 조간)

고용노동부, 임금체불 없는 추석을 위해 현장 중심 강력 대응

- '23년 추석 대비 「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」 마련·시행

■ **명절 전 [취약분야 선제적 체불예방] + [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] + [생계지원] 집중** 전개

- **건설업 등** 취약업종·계층 중심 **기획 근로감독** 등 **선제적 체불예방 강화**
- **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,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** 등 **피해근로자 지원 강화**
- **집중지도기간·체불청산 기동반 운영**,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**비상대응체계 가동**

고용노동부(장관 이정식)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9. 4.부터 4주간(9. 4.~9. 27.) **'체불예방·청산 집중지도기간'을 운영**하는 등 **「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」**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

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, **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**으로 **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·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**하는 것이 특징이다.

- 연도별 체불액(억원): ('18) 16,472 → ('19) 17,217 → ('20) 15,830 → ('21) 13,505 → ('22) 13,472
- ('23년 상반기) 〔체 불 액〕 8,232억 원으로 전년 동기(6,655억 원) 대비 23.7% 증가

1 주택시장의 침체,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,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**건설업을 중심**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**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**한다.

- 건설업 체불 비중: ('20년) 17.6% → ('21년) 19.4% → ('22년) 21.7% → ('23.上) 23.9%

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**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**하여 **기성금 적기(조기) 집행**을 지도하고, **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**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.

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**소규모 제조업**을 중심으로 **「현장예방 점검의 날」**을 운영하고 **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**한다.

2 **상습적이고 고의적**인 체불 사업주는 **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**한다.

우선, 상습·고의적 체불(의심) 사업장에 대해 **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**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**즉시 사법처리**한다.

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**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**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**구속수사**하고,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**체포영장을 신청**한다.

한편, **일정 규모 이상**(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) 고액·집단 체불 사건은 **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**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.

3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**대지급금**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기간을 **한시적(9.4.~10.6.)으로 단축(14일→7일)**하고, **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,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** 금리도 **한시적(9.11.~10.31.)으로 인하**한다.

① 연 1.5% → 1.0%,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
② (담보) 연 2.2% → 1.2%, (신용) 연 3.7% → 2.7%, 사업주 1인당 1억5천만 원 한도

4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추석 전 4주간 **'집중지도기간'을 운영**하는 한편, 휴일·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**'근로감독관 비상근무'**도 3주간(9.11.~9.27.) 실시한다.

또한,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**'체불청산 기동반'이 편성·운영**되며, 주요 사안 발생 시 **즉시 현장에 출동**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.

이정식 장관은 "임금체불은 **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**"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"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**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**을 지시했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하창용 (044-202-7553)
		담당자	사무관 주무관	이강욱 (044-202-7521) 백승희 (044-202-7538)
담당 부서	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	책임자	과 장	손재형 (044-202-7554)
		담당자	사무관	백경남 (044-202-756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**'23년 추석 대비 「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」 주요 내용**

1 취약업종 체불예방 및 청산 집중 지도

❶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 전개

○ (모니터링 강화) 관내 주요 건설현장의 체불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, 발생 시 조사 · 처리 · 대지급금 등 절차 신속 집행

○ (민간부문) 근로감독관 2인 1조로 민간 건설현장* 방문, 체불확인 및 체불예방과 기성금 적기(조기) 집행 지도

* 공사금액 30억 이상 **민간 건설현장 500개소**

○ (공공부문) 명절 전 관계부처·기관·공사현장 대상*으로 기성금 조기집행, 체불 자체점검, 「임금직접지급제」 시행 등 협조공문 발송('8월말, 본부)

*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(362개소), 주요 건설업체(50개소), 공공건설현장(500개소)

○ (불법 하도급 근절) 사건 처리 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,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

❷ 「현장예방 점검의 날」 연계로 기초질서 집중 홍보·점검

○ 「3차 현장예방 점검의 날」① 운영으로 체불 취약업종② 대상 추석 前 4대 기초노동질서 집중 홍보③ 및 현장 지도 · 점검(9. 18. ~ 9. 27.)

① 관련 단체(중기중앙회)와 협업을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 합동 홍보(온라인 등)

②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중심 현장지도

③ (4대 기초노동질서) 서면 근로계약 체결, 임금명세서 교부, 최저임금 지급, 임금체불 예방

❸ 취약계층 보호 점검 및 취약사업장 체불 예방 사전 지도

○ 청년 · 외국인 · 여성 · 장애인 ·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해 「취약계층 보호 점검」 실시(총 1,650개소, ~11.10)

○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(15,013개소)에 대해서는 일괄 사전지도

2 근로감독 강화 및 체불사건 신속·엄정 수사

❶ 「임금체불 근절」 기획 근로감독 실시

○ 체불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체불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,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

- ■ (방식)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
- ■ (대상) 건설 현장을 포함,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
- ■ (범위) 감독실시일 전 3년간 체불 금액을 확인하고
- ■ (조치) 체불 관련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범죄인지 원칙

○ (감독대상) 상습·고의적 체불(의심) 사업장 (120개소) +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체불 발생 건설현장 (12개소)

○ (감독기간) 8.23. 착수, 10월 말까지 실시 (필요시 연장)

❷ 일정 규모 이상 고액·집단체불 집중 청산 (청산율 제고)

- ■ (대상) ① 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인 진행 중인 사건
  ② 집중지도기간 중 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 체불발생(우려)
- ■ (방법) 기관장 현장 방문 등 직접지도
- ■ (조치) 신속히 체불확정 후 집중 청산지도, 대지급금 지원 등

❸ 체불사건 신속·엄정 수사를 위한 3대 대응원칙 견지

1) [신속] 단순 체불사건 전담 감독관을 지정, 「조사-사법처리-대지급금 지원」 등 일괄 처리하는 「임금체불 신속청산 지원체계」 운영

2) [적극] 언론, 제보 등으로 입수된 사안에 대해 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 접수가 없어도 「직권조사」 착수

3) [엄정]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은닉,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·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(5천만원)

* 5천만원 미만이라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

○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,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

3 생활안정 지원 등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

❶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(집중) 처리

○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 한시적 단축

구분	단축기간	지원기간
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	14일 → 7일	'23. 9. 4. ~ 10. 6.

○ 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대해 **추석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**되도록 청구서 등 **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최대한 신속히 통보**

❷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계 지원

○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**한시적으로 0.5%p 인하** (연1.5→1.0%) 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

구분	지원한도	적용금리	적용기한
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	체불액 범위내 근로자 1인당 1천만원	연1.5 → 1.0%	9.11~10.31

❸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적극 활용으로 체불청산 지원

○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를 **한시적으로 인하 1.0%p 인하**

구분	지원한도	적용금리	적용기한
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	사업주 1인당 1억5천만원,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	신용·연대보증: 3.7→2.7% 담보: 2.2 → 1.2%	9.11~10.31

4 체불청산 비상대응체계 운영

❶ 「체불예방 · 청산 집중지도기간」 운영 (3 → 4주간으로 확대)

○ 추석 **명절 전** 4주간(9. 4. ~ 9. 27.)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**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 구축**

○ 휴일·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**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**하기 위해 **근로감독관** 비상근무 3주간(9. 11. ~ 9. 27.) 실시

❷ 「체불청산 기동반」 가동

○ 각 지방관서별로 「체불청산 기동반」을 편성 · 운영(9. 4. ~ 9. 27.)하고, 경찰 · 자치단체 등 **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**

○ 임금체불로 **집단 노사갈등**이나, **건설현장 농성**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동반이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청산 지도

참고 1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제도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구분</th><th>도산대지급금</th><th colspan="2">간이대지급금</th></tr>
<tr><th colspan="2"></th><th></th><th>퇴직자</th><th>재직자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지급사유</td><td>▸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,
▸지방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</td><td colspan="2">▸법원의 확정판결
▸지방관서의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 확인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지급요건</td><td>대상근로자</td><td>퇴직기준일*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
*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</td><td>▸(확정판결)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
▸(체불확인서)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</td><td>①소송·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(일용근로자 제외)
②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% 미만
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(확정판결의 경우) 또는 1년 이내 진정(체불확인서의 경우) 제기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사업주기준</td><td colspan="3">①법 제3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되어(= 산재보험 적용 사업)</td></tr>
<tr><td>②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</td><td>②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</td><td>②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</td></tr>
<tr><td>③파산선고, 회생절차개시 결정, 도산등사실인정</td><td colspan="2">③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지급범위</td><td colspan="2">(1) 최종 3개월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</td><td>(2)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(또는 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 중 체불액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상한액</td><td>최대 2,100만원
(연령별 차등, 월별(연별) 상한액 존재)</td><td>총 1,000만원(임금 등 700만원, 퇴직급여 700만원)</td><td>700만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청구기한</td><td>파산선고, 회생절차개시 결정,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</td><td colspan="2">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횟수제한</td><td colspan="2">-</td><td>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</td></tr>
</table>

참고 2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제도

□ 사업 개요

○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**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**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

□ 지원 요건

구분	지원 요건
근로자 요건	○ **(재직자)** 체불 사업장(폐업된 경우는 제외)에서 재직 중 ○ **(퇴직자)** 체불 사업장(폐업된 경우는 제외)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*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
체불 요건	○ 신청일 이전 **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** *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(개별직종노임단가)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('23년 768,355원) 금액 이상이 체불

□ 융자 조건

구분	융자 조건
융자금액	○ **(재직자)**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(총 1천만원 한도) *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○ **(퇴직자)** 최종 3개월간의 임금(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),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(총 1천만원 한도)
이자율	○ **(금리 한시 인하)** 연 1.5% → 1.0%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상환방법	○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*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,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

□ 사업추진체계

근로자		근로복지공단		근로자		은행
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(근로복지공단)	➡	융자 결정,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 (근로자, 은행)	➡	융자계약 체결 (기업은행)	➡	융자금 지급 (근로자)

참고 3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

□ 사업 개요

○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등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

□ 지원 요건

구분	지원 요건
사업주 요건	① **일시적 경영상 어려움**으로 체불 (시행규칙 제8조의5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) ② **산재보험 적용대상** 사업장으로서 **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** * 다만, 휴·폐업 사업장,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
근로자 요건	○ **(재직자)** 해당 사업장에서 **6개월 이상 계속 근로**하고 있는 근로자 ○ **(퇴직자)** 해당 사업장에서 **6개월 이상 계속 근로**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**1년 이내에 퇴직**한 근로자

□ 융자 조건

구분	융자 조건
융자금액	○ 사업주당 **1억5천만원** 한도(근로자 1인당 **1천5백만원** 한도) *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
이자율	○ **(금리 한시 인하)** (담보) 연 2.2% → 1.2%, (신용) 연 3.7% → 2.7%
상환방법	○ 1년 또는 2년 거치,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상환(선택 가능) * 다만 천재지변,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

□ 사업추진체계

사업주		지방관서		사업주		근로복지공단		사업주		은행
융자대상 사업주 확인 신청서 제출 (지방관서)	➡	융자요건, 체불금액 등 확인	➡	융자신청 (근로복지공단)	➡	융자예정자 통보	➡	융자계약 체결 (기업은행)	➡	융자금 지급 (근로자)